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Ⅱ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및 보호 대책

2012. 10.

국회의원 정 청 래
(민주통합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목 차

I. 서론	3
II.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2008-2011년)	5
1. 2008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5
2. 2009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8
3. 2010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10
4. 2011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13
5.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 피랍 현황	15
6.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분석	18
III.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	19
1. 대응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활동	19
2.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활동	28
IV.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1.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한계 및 개선방안	34
2. 온두라스 한지수씨 사건을 통해 본 재외국민보호 대책	37
[부록]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43

1. 서론

1. 해외여행자 수 천만 시대

- 해외 여행자 수가 200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10, 2011년도에 1,200만을 넘어섬. 올해,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명을 돌파했으니 사실상 국민 4명 중 1명이 매년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임.

<표1. 2008~2012 해외여행자 현황>

연도	출국자 수
2008	11,996,094명
2009	9,494,111명
2010	12,488,364명
2011	12,693,703명
2012(1월-7월)	6,594,936명

[출처 : 한국관광공사]

- 이처럼 해외 여행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해외 유학생 및 취업자 수까지 증가함에 따라 재외 국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2.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 최근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보면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와 가해를 모두 합해 2008년 7,458명, 2009년 7,336명, 2010년 7,717명, 2011년 7,808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특히 우리 국민의 범죄 가해는 2008년 1,754명, 2009년 1,734명, 2010년 1,486명, 2011년 1,248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는 2008년 3,490명, 2009년 3,517명, 2010년 3,716명, 2011년 4,45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음.
- 또, 최근에는 2011.2 리비아 내전, 2011.3 일본 지진, 2012.2 이집트 시나이반도 아국인 피랍사건, 2012. 2 필리핀 아국인 납치사건, 2012. 4 나이지리아 아국인 납치사건, 2012.6 페루 아국인 탑승헬기 추락사건 등 해외에서 예기치 않게 중대한 피해를 입는 우리 국민들의 사건·사고가 발생해왔음.

<표2.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연도	범죄피해	범죄 가해	기타		총계
			강제 추방	행려병자, 자살 등	
2008년	3,490	1,754	826	1,388	7,458
2009년	3,517	1,734	602	1,483	7,336
2010년	3,716	1,486	518	1,997	7,717
2011년	4,458	1,248	377	1,725	7,808

[출처 : 외교통상부 / 단위: 명]

- 최근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사건·사고도 연평균 약 1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3.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대책 미흡

- 이와 같이 해외 여행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사건·사고 현황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은 항상 능장대응 식으로 이루어져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옴.

- 특히, 외교통상부의 최우선 업무는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한-EU FT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과 같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외교, 통상적 업무에만 주력해 정작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기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음.
- 이에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현황 및 정부의 재외 국민 보호 실태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II.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2008-2011년)

1. 2008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 2008년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은 범죄 피해 및 가해와 기타를 모두 포함해 약 7,458명으로 나타남.
- 범죄 피해의 경우 총 3,490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살인 33명, 강도 217명, 절도 및 분실 1,392명, 강간 및 강제추행 22명, 납치 및 감금이 145명, 폭행 및 상해가 282명, 사기 관련 피해(횡령, 배임, 공갈 등 포함) 258명, 안전사고 사망 149명, 행방불명 294명, 교통사고 144명, 기타 554명으로 나타남.
- 범죄 가해의 경우 총 1,754명으로 나타남. 가해 유형별로 보면 살인 9명, 강도 22명, 절도 90명, 강간 및 강제추행 13명, 납치 및 감금 11명, 폭행 및 상해 123명, 사기 및 횡령 164명, 도박 14명, 마약 62명, 출입국 관련 범죄 169명, 밀수 7명, 성매매 46명, 교통사고 57명, 불법체류 637명, 기타 230명 등으로 나타났음.
- 범죄 피해 및 가해 이외에는 행려병자 64명, 강제추방 826명, 기타 1,297명, 자살 27명 등으로 나타났음.

-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 및 국가와 관련, 재외공관별로 살펴보면 주 중국대사관 589명, 주 스페인 대사관 556명, 주 나고야 총영사관 543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470명, 주 필리핀 대사관 356명, 주 이탈리아 대사관 344명, 주 광저우 총영사관 306명, 주 칭다오 총영사관 281명,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250명, 주 호치민 총영사관 227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과 관련, 재외공관 순서대로 보면 주 프랑스 대사관 406명, 주 스페인 대사관 305명, 주 시드니 총영사관 274명, 주 중국 대사관 184명, 주 선양 총영사관 180명, 주 이탈리아 대사관 159명, 주 칭다오 총영사관 157명, 주 필리핀 대사관 137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132명,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113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범죄 가해 현황은 주 일본 대사관 494명, 주 오사카 총영사관 193명, 주 나고야 총영사관 128명, 주 선양 총영사관 105명, 주 필리핀 대사관 83명,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74명, 주 중국 대사관 58명, 주 호치민 총영사관 50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47명, 주 몽골대사관 39명 순으로 나타남.

<표3. 2008년 지역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국가												
아시아 태평양	중국	3	14	47	4	92	143	42	45	108	35	247	780
	일본	5	0	65	0	1	0	1	14	2	6	19	113
	기타	12	103	160	11	29	99	157	58	129	61	123	942
	소계	20	117	272	15	122	242	200	117	239	102	389	1,835
미주	미국	5	1	3	0	1	4	11	8	2	6	8	49
	캐나다	0	1	9	2	1	10	26	3	8	4	16	80
	중남미	3	27	6	0	6	5	2	3	5	4	51	112
	소계	8	29	18	2	8	19	39	14	15	14	75	241
유럽	소계	3	41	1,077	4	2	15	15	15	40	20	89	1,321
아중동	소계	2	30	25	1	13	6	4	3	0	8	1	93
합 계		33	217	1,392	22	145	282	258	149	294	144	554	3,490

<표4. 2008년 지역별 재외국민 범죄 가해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제추방	납치	폭행	사기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사고	불법체류	기타	합계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아시아 태평양	중국	1	5	14	2	0	18	12	1	12	12	2	18	19	104	37	257
	일본	3	10	45	1	0	51	22	2	31	233	0	10	7	487	67	969
	기타	4	6	19	9	9	32	101	11	9	11	3	11	15	9	75	324
	소계	8	21	78	12	9	101	135	14	52	256	5	39	41	600	179	1,550
미주	미국	0	0	8	0	1	7	9	0	4	4	0	6	7	10	15	71
	캐나다	0	0	2	0	1	6	7	0	1	1	1	1	1	8	1	30
	중남미	1	1	2	0	0	3	4	0	2	1	0	0	3	0	2	19
	소계	1	1	12	0	2	16	20	0	7	6	1	7	11	18	18	120
유럽	계	0	0	0	1	0	3	6	0	2	7	1	0	5	17	31	73
아중동	계	0	0	0	0	0	3	3	0	1	0	0	0	0	2	2	11
합계		9	22	90	13	11	123	164	14	62	269	7	46	57	637	230	1,754

<표5. 2008년 지역별 재외국민 기타 사건·사고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국가	강제 추방	기타		합계
			행려병자	자살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중국	142	14	449	605
	일본	404	10	173	587
	기타	40	15	182	237
	소계	586	39	804	1,429
미주	미국	150	3	81	234
	캐나다	50	3	15	68
	중남미	1	5	33	39
	소계	201	11	129	341
유럽	계	13	13	355	381
아중동	계	26	1	36	63
합계		826	64	1,324	2,214

2. 2009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 2009년의 경우 범죄 피해 및 가해와 기타를 모두 포함해 약 7,336명의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사건·사고 유형별로 보면 범죄 피해의 경우 살인 43명, 강도 167명, 절도 및 분실 1,324명, 강간 및 강제추행 30명, 납치 및 감금 155명, 폭행 및 상해 295명, 사기 관련 피해(횡령, 배임, 공갈 등 포함) 340명, 안전사고 사망 131명, 행방불명 328명, 기타 544명 등 총 3,517명으로 나타남.
- 범죄 가해의 경우 살인 15명, 강도 20명, 절도 91명, 강간 및 강제추행 24명, 납치 및 감금 16명, 폭행 및 상해 143명, 사기 관련 범죄 145명, 도박 41명, 마약 72명, 출입국 관련 범죄 198명, 밀수 23명, 성매매 32명, 교통사고 86명, 불법체류 622명, 기타 206명 등 총 1,734명으로 나타남.
- 한편 범죄 피해 및 가해 이외에는 행려병자 56명, 강제추방 1,118명, 기타 1,314명, 자살 113명 등으로 나타남.
-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및 국가와 관련, 재외공관별로 살펴보면 주 선양 총영사관 562명, 주 프랑스 대사관 444명, 주 일본 대사관 430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382명, 주 중국 대사관 368명, 주 시드니 총영사관 331명, 주 칭다오 총영사관 303명, 주 태국 대사관 268명, 주 나고야 총영사관 267명, 주 스페인 대사관 234명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는 주 프랑스 대사관 282명, 주 선양 총영사관 236명, 주 중국 대사관 236명, 주 스페인 대사관 233명, 주 시드니 총영사관 216명, 주 칭다오 총영사관 192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185명,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135명, 주 이탈리아 대사관 132명, 주 필리핀 대사관 128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 가해의 경우에는 주 일본 대사관 374명, 주 오사카 총영사관 142명, 주 선양 총영사관 126명, 주 나고야 총영사관 99명, 주 중국 대사관 81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74명, 주 태국 대사관 67명, 주 시드니 총영사관 57명, 주 호치민 총영사관 57명, 주 필리핀 대사관 51명 순으로 나타남.

<표6. 2009년 지역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주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국가												
아시아 태평양	중국	2	18	94	4	99	153	72	32	131	76	343	1,024
	일본	8	0	58	0	0	0	2	13	9	3	18	111
	기타	8	65	208	12	42	108	164	62	141	58	70	938
	소계	18	83	360	16	141	261	238	107	281	137	431	2,073
미주	미국	4	3	6	2	2	7	3	4	6	6	11	54
	캐나다	0	0	11	3	0	6	52	2	2	4	21	101
	중남미	12	22	21	0	7	3	4	4	1	0	16	90
	소계	16	25	38	5	9	16	59	10	9	10	48	245
유럽	소계	2	40	898	8	3	16	41	11	38	7	59	1,123
아중동	소계	7	19	28	1	2	2	2	3	0	6	6	76
합 계		43	167	1,324	30	155	295	340	131	328	160	544	3,517

<표7. 2009년 지역별 재외국민 범죄 가해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주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도박	마약	출입 국	밀수	성매 매	교통 사고	불체 법류	기타	합계
	국가																
아시아 태평양	중국	0	3	18	4	2	17	7	34	24	20	14	15	35	157	41	391
	일본	5	7	46	2	1	53	17	1	28	149	0	8	8	371	63	759
	기타	8	8	16	11	12	45	94	5	10	18	6	8	35	26	44	346
	소계	13	18	80	17	15	115	118	40	62	187	20	31	78	554	148	1,496
미주	미국	2	0	2	2	1	9	4	1	5	1	1	0	1	18	13	60
	캐나다	0	0	2	3	0	11	16	0	1	0	2	1	1	31	6	74
	중남미	0	0	0	0	0	3	3	0	2	3	0	0	0	4	15	
	소계	2	0	4	5	1	23	23	1	8	4	3	1	2	49	23	149
유럽	계	0	2	6	2	0	4	2	0	2	6	0	0	5	12	27	68
아중동	계	0	0	1	0	0	1	2	0	0	1	0	0	1	7	8	21
합계		15	20	91	24	16	143	145	41	72	198	23	32	86	622	206	1,734

<표8. 2009년 지역별 재외국민 기타 사건·사고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국가	강제 추방	기타		합계
			행려병자	자살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중국	45	7	482	534
	일본	264	4	230	498
	기타	37	21	265	323
	소계	346	32	977	1,355
미주	미국	144	3	100	247
	캐나다	69	6	23	98
	중남미	3	1	26	30
	소계	216	10	149	375
유럽	계	18	10	263	291
아중동	계	22	4	38	64
합계		602	56	1,427	2,085

3. 2010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 2010년의 경우, 범죄 피해 및 가해, 기타를 모두 포함해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7,717명으로 나타났다.
- 사건·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범죄 피해 현황은 살인 32명, 강도 187명, 절도 및 분실 1,518명, 강간 및 강제추행 29명, 납치 및 감금 126명, 폭행 및 상해 265명, 사기 관련 피해(횡령, 배임, 공갈 등 포함) 328명, 안전사고 사망 140명, 행방불명 439명, 교통사고 160명, 기타 493명 등 총 3,71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죄 가해 현황은 살인 15명, 강도 7명, 절도 80명, 강간 및 강제추행 26명, 납치 및 감금 9명, 폭행 및 상해 115명, 사기 관련 범죄 105명, 도박 20명, 마약 61명, 출입국 관련 범죄 183명, 밀수 36명, 성매매 31명, 교통사고 65명, 불법체류 463명, 기타 270명 등 총 1,486명으로 나타남.
- 범죄 피해 및 가해 이외에는 행려병자 72명, 강제추방 518명, 기타 1,767, 자살 158명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역 및 국가와 관련, 재외공관별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 태국 대사관 530명, 주 일본 대사관 469명, 주 중국 대사관 445명, 주 오사카 총영사관 389명, 주 스페인 대사관 373명, 주 칭다오 총영사관 327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312명, 주 호치민 총영사관 283명,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273명, 주 시드니 총영사관 257명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는 주 프랑스대사관 318명, 주 스페인 대사관 306명, 주 중국 대사관 276명, 주 선양 총영사관 216명, 주 태국 대사관 195명, 주 칭다오 총영사관 175명,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171명, 주 이탈리아 대사관 162명, 주 시드니 총영사관 138명, 주 호치민 총영사관 127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범죄 가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는 주 일본 대사관 344명, 주 태국 대사관 122명, 주 오사카 총영사관 97명, 주 선양 총영사관 83명, 주 중국 대사관 73명, 주 나고야 총영사관 69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61명,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54명,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45명, 주 광저우 총영사관 37명 순으로 나타남.

<표9. 2010년 지역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헬륨 방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국가												
아시아 태평양	중국	3	6	77	7	87	133	91	45	139	58	298	944
	일본	7	0	25	0	0	5	3	21	23	4	10	98
	기타	9	31	208	12	26	101	154	51	197	53	84	926
	소계	19	37	310	19	113	239	248	117	359	115	392	1,968
미주	미국	7	3	6	0	0	3	2	6	5	7	3	42
	캐나다	0	2	4	4	0	4	34	6	5	4	12	75
	중남미	5	50	36	1	4	3	6	1	6	2	39	153
	소계	12	55	46	5	4	10	42	13	16	13	54	270
유럽	소계	1	61	1,115	5	1	12	33	7	64	22	34	1,355
아중동	소계	0	34	47	0	8	4	5	3	0	10	12	123
합계		32	187	1,518	29	126	265	328	140	439	160	492	3,716

<표10. 2010년 지역별 재외국민 범죄 가해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살인	강도	절도	강제추행	남치금	폭행	사기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사고	불법류	기타	합계
	국가																
아시아 태평양	중국	1	0	11	3	0	21	10	12	18	8	12	17	26	115	40	294
	일본	5	2	41	3	0	36	13	0	18	141	2	4	14	279	97	655
	기타	2	3	19	9	5	28	64	6	20	23	20	1	17	16	67	300
	소계	8	5	71	15	5	85	87	18	56	172	34	22	57	410	204	1,249
미주	미국	6	1	4	2	3	17	4	1	4	4	0	3	0	6	29	84
	캐나다	0	1	1	3	0	4	3	1	0	0	0	4	1	23	4	45
	중남미	1	0	0	0	0	1	1	0	0	1	2	1	2	6	2	17
	소계	7	2	5	5	3	22	8	2	4	5	2	8	3	35	35	146
유럽	계	0	0	3	6	1	8	9	0	1	4	0	1	5	15	26	79
아중동	계	0	0	1	0	0	0	1	0	0	2	0	0	0	3	5	12
합계		15	7	80	26	9	115	105	20	61	183	36	31	65	463	270	1,486

<표11. 2010년 지역별 재외국민 기타 사건·사고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국가	강제추방	기타		합계
			행려병자	자살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중국	10	18	554	582
	일본	268	13	289	570
	기타	40	15	379	434
	소계	318	46	1,222	1,586
미주	미국	124	3	182	309
	캐나다	45	2	31	78
	중남미	4	2	51	57
	소계	173	7	264	444
유럽	계	16	9	388	413
아중동	계	11	10	51	72
합계		518	72	1,925	2,515

4. 2011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 2011년의 경우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 수는 총 7,808명으로 지난 4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건·사고 유형별로 보면 범죄 피해의 경우 살인 28명, 강도 159명, 절도 및 분실 2,584명, 강간 및 강제추행 17명, 납치 및 감금 121명, 폭행 및 상해 259명, 사기 관련 피해(횡령, 배임, 공갈 등 포함) 207명, 안전사고 사망 100명, 행방불명 367명, 교통사고 205명, 기타 411명 등 총 4,45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죄 가해의 경우에는 살인 9명, 강도 13명, 절도 79명, 강간 및 강제추행 16명, 납치 및 감금 15명, 폭행 및 상해 116명, 사기 범죄 88명, 도박 3명, 마약 45명, 출입국 관련 범죄 158명, 밀수 14명, 성매매 20명, 교통사고 73명, 불법체류 359명, 기타 240명 등 총 1,248명으로 나타남.
- 범죄 피해 및 가해 이외에는 행려병자 53명, 강제추방 377명, 기타 1,545명, 자살 127명 등으로 나타남.
-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및 국가 관련, 재외공관별로 살펴보면 주 필리핀 대사관 799명, 주 태국 대사관 521명, 주 프랑스 대사관 503명, 주 선양 총영사관 397명, 주 스페인 대사관 383명, 주 일본 대사관 287명, 주 중국 대사관 255명,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252명, 주 이탈리아 대사관 231명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224명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범죄 피해가 많이 일어난 순서는 주 필리핀 대사관 774명, 주 프랑스 대사관 405명, 주 스페인 대사관 381명, 주 태국 대사관 276명, 주 선양 총영사관 219명, 주 이탈리아 대사관 212명,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197명, 주 시드니 총영사관 144명, 주 중국 대사관 122명, 주 호치민 총영사관 118명 순으로 나타남.

- 범죄 가해가 많이 일어난 순서는 주 일본 대사관 267명, 주 태국 대사관 116명, 주 선양 총영사관 94명,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92명, 주 오사카 총영사관 87명, 주 나고야 총영사관 65명, 주 상하이 총영사관 56명, 주 중국 대사관 48명,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36명, 주 토론토 총영사관 26명 순으로 나타남.

<표12. 2011년 지역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주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불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3	7	96	4	64	114	51	21	82	57
일본	2		0	6	0	0	1	2	11	6	4	8	40
기타	8		33	984	8	39	104	103	45	201	115	75	1,715
소계	13		40	1,086	12	103	219	156	77	289	176	315	2,486
미주	미국	8	2	3	0	2	4	1	1	19	4	6	50
	캐나다	0	9	10	1	0	8	19	2	5	2	26	82
	중남미	4	41	58	0	4	9	2	5	10	1	25	159
	소계	12	52	71	1	6	21	22	8	34	7	57	291
유럽	소계	1	36	1,415	3	2	15	27	6	44	18	35	1,602
아중동	소계	2	31	12	1	10	4	2	9	0	4	4	79
합계		28	159	2,584	17	121	259	207	100	367	205	411	4,458

<표13. 2011년 지역별 재외국민 범죄 가해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주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도박	마약	출입 국	밀수	성매 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3	2	14	4	0	20	1	1	3	10	8	13	25	119
일본	2		4	36	4	1	47	16	0	19	123	0	1	14	184	65	516
기타	2		4	8	6	13	31	56	2	19	15	4	3	16	24	37	240
소계	7		10	58	14	14	98	73	3	41	148	12	17	55	327	134	1,011
미주	미국	2	3	14	0	1	7	3	0	1	5	0	1	5	3	72	117
	캐나다	0	0	1	0	0	7	4	0	1	0	0	0	2	20	0	35
	중남미	0	0	3	0	0	0	2	0	1	2	1	2	1	2	9	23
	소계	2	3	18	0	1	14	9	0	3	7	1	3	8	25	81	175
유럽	계	0	0	3	2	0	4	4	0	1	3	1	0	9	7	16	50
아중동	계	0	0	0	0	0	0	2	0	0	0	0	1	0	9	12	
합계		9	13	79	16	15	116	88	3	45	158	14	20	73	359	240	1,248

<표14. 2011년 지역별 재외국민 기타 사건·사고 현황>

(단위:명)

지역	유형 국가	강제추방	기타		합계
			행려병자	자살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중국	9	16	484	509
	일본	134	5	276	415
	기타	40	18	294	352
	소계	183	39	1,054	1,276
미주	미국	124	0	131	255
	캐나다	55	2	27	84
	중남미	1	3	53	57
	소계	180	5	211	396
유럽	계	7	7	337	351
아중동	계	7	2	70	79
합계		377	53	1,672	2,102

5.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 피랍 현황

- 한편, 최근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피랍되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표15 참조)
- 외교통상부에서 피랍 사례와 관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무사히 석방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러한 사건의 해결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이 오랜 기간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따라서, 피랍사건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범죄 피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책이 요구됨.

<표15. 08.1월-12.9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 피랍 주요 사례>

일시	발생지	피랍자/선박	피랍 개요	납치단체	조치 및 사건해결
08.1.9	과테말라	교민	과테말라 교민이 귀가길에 무장괴한에 의해 피랍	무장괴한	○ 몸값지불 없이 석방
08.3.29	필리핀	사업가	사업차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방문중이던 아국인 1명이 납치범에게 피랍	신원미상	○ 공관의 적극 노력 및 필리핀측 (Addiong주지사 등)의 협조 하, 가족과 납치범의 협상 끝에 무사 석방
08.5.31	필리핀	교민	필리핀 Pangasinan주에 체류중인 교민 1명이 자택 인근에서 무장납치범에게 피랍	무장괴한	○ 공관의 적극 지원 통해 피랍자 가족과 납치범 간 협상 결과 무사 석방
08.7.14	멕시코	방문객	멕시코 북부 레이노사시를 방문중이던 우리국민 2명이 납치범에게 피랍	신원미상	○ 몸값지불 없이 석방
08.9.10	해상	브라이트 루비호 (한국선사)	소말리아 아덴만 연안에서 아국 선박(아국인 8명, 미얀마인 14명 포함 총22명)이 해적에 의해 피랍	소말리아 해적	○ 선주와 납치단체간 협상으로 전원 무사 석방
08.9.19	과테말라	교민	과테말라 시티 소재 쇼핑몰에서 미상의 납치범에 의해 피랍	신원미상	○ 공관의 적극 지원 통해 피랍자 가족과 납치범 간 협상 결과 무사 석방
08.9.30	필리핀	어학연수생	필리핀 케손시에서 유학중이던 우리국민이 카메라 구입을 구실삼아 접근한 우리국민과 필리핀인에 의해 피랍	아국인	○ 피랍자가 납치범과 격투 후 무사 탈출
08.11.15	해상	웬스타 비너스호 (일본 선사)	아국인 5명 등 피랍	소말리아 해적	○ 협상으로 피랍 90일 후 전원 무사 석방
09.1.23	과테말라	교민	과테말라 교민이 주거지에서 중식 후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괴한에 의해 피랍	무장괴한	○ 신고접수 즉시 비상대책반 가동 ○ 내무부장관 면담 및 협조 요청 ○ 납치범 감시 소홀한 사이 피해자가 도주해 가족에게 연락 ○ 영사 및 주재국 내무부 납치 전담팀 원들이현장에 출동해 교민 구조
09.6.12	예멘	교민	예멘 체류 아국인 1명이 예멘 사다지역에서 산책차 외출 중 피랍·피살	예멘 범죄단체	○ 사건대책본부설치(6.13) ○ 외교부 대변인 명의 규탄성명(6.16) ○ 관계부처 합동수사팀 파견(6.18) ○ 현지 교민 신변안전 유의 당부 및 비필수요원 귀국 권고 ※ 예멘 사다 인근에서 사체 발견(6.15)
09.9.18	과테말라	교민	과테말라 교민 자이 운영하던 회사 입구에서 불상의 괴한 3명에게 피랍	불상의 괴한 3명	○ 주재국 내무부 납치 전담반, 내무부 장관, 부통령 등과 접촉, 협조 요청 ○ 몸값협상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 몸값 지불후 석방된 아국인 지원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및 보호 대책

일시	발생지	피랍자/선박	피랍 개요	납치단체	조치 및 사건해결
10.4.4	해상	삼호 드림호 (한국선사)	인도양소말리아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에서 삼호드림호 (아국인 5, 필리핀인 19명)가 해적에 의해 피랍	소말리아 해적	○선사와 해적간 석방협상을 통해 피랍 217일 후 10.11.6 선원 전원 석방
10.10.9	해상	금미 305호 (케냐선사)	케냐 연안 10마일 라우섬 인근 해상에서 금미305호가(아국인 2, 중국인 2명, 케냐인 39명이 승선) 해적에 의해 피랍	소말리아 해적	○선사와 해적간 석방협상 등을 통해 피랍 120일 후 11.2.9 선원 전원 석방
11.1.15	해상	삼호 주얼리호 (한국선사)	아랍에미리트에서 스리랑카로 이동중 아라비아해에서 선원 21명(아국인 8, 인도인 2, 미얀마인 11명)이 해적에 의해 피랍	소말리아 해적	○피랍 6일 후 청해부대 구축작전으로 11.1.21 전원 석방
11.4.30	해상	제미니호 (싱가포르선사)	인도네시아에서 케냐로 이동중 선원 25명이(아국인 4, 인도인 13, 중국인 5, 미얀마인 3) 케냐 남동방 약 193마일해상에서 피랍	소말리아 해적	○ 11.11.30 아국인을 제외한 여타선원 21명 및 선박은 석방 현재 싱가포르측 선사와 해적측간 협상 진행중 아국선원 4명 모두 안전은 지속 확인됨
11.7.24	중국	교민	칭다오에서 신원미상의 중국인들에 의해 납치, 유산으로 이동	신원미상 의 중국인들	○피해자가 탈출하여 공관에 도움 요청 ○유산시 경찰 당국에 우선 신변보호 요청 ○위해 영사협력원 현장 출동, 상황파악 및 면담 후 위해 공항으로 안전하게 안내하여 귀국시킴.
11.9.22	필리핀	여행객	필리핀 입국 후 배낭여행중 현지 한국인들에 의해 피랍	필리핀 도피 한국 범죄인들	○경찰과의 공조로 2명은 체포되어 한국과 필리핀에서 각각 재판중 (피해자는 상금 행탈)
11.10.21	필리핀	방문객	필리핀 민다나오섬 호텔에서 외출후 현지 납치범들에게 피랍	필리핀 범죄단체	○비상대책반 가동 및 '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3명 모두 '11.11.8 석방'
11.12.13	기니	방문객	기니공화국 코냐크리(수도)에 구리수입차 방문한 아국인이 현지 괴한에게 피랍	나이지리아 범죄단체	○현지경찰과 공조로 12.19 피해자 석방 및 범인 검거
12.1.13	남아공	사업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사업투자 상담위해 방문한 아국인父女가 현지 괴한에게 피랍	나이지리아 범죄단체	○현지경찰과 공조로 12.1.5 피해자 석방 및 범인 검거
12.4.25	나이지리아	근로자	나이지리아 건설 현장에서 이동중 현지 괴한에게 피습 후 피랍	나이지리아 범죄단체	○건설회사측과 범죄단체간 석방 협상을 통해 2.5.3 석방
12.8.12	예멘	선원	오만 접경수역 예멘 영해에서 조업중 현지 부족주민에 의해 어류 6톤을 강취당하고, 억류되었다가 12시간만에 석방	예멘 현지 부족	○주에멘대사관, 현지경찰에 연락 및 협조 요청 ○선사측과 긴밀협력 ○피랍선원 선주사인 부른수선측의 협상노력 후 12시간만에 무사 석방

[출처 : 외교통상부]

6.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분석

-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건·사고 발생 현황은 2008년 7,458명, 2009년 7,336명, 2010년 7,717명, 2011년 7,808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 가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범죄 피해는 2008년 3,490명, 2009년 3,517명, 2010년 3,716명, 2011년 4,45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임.
- 사건·사고 유형별로 보면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절도 및 분실로 나타났으나 강도, 납치 및 감금, 폭행 및 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도 한 해에 몇백건씩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 또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사망, 행방불명, 자살 등도 한해에 몇백건 씩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보호대책과 더불어 재외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음.
- 지역 및 국가별로 보면 재외국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범죄 피해와 가해 발생 양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 전체 사건·사고 발생 현황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범죄 피해의 경우 중국, 동남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호주 등에서도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가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임. 이는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발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역과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함.
- 우리 국민의 범죄 가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과 더불어 중국, 태국 등에서 높게 발생하고 있음.

-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중 절도 및 분실이 전 지역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 및 국가별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폭행 및 상해 등과 같은 강력범죄,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절도 및 분실 사고가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미주지역은 대체로 사건·사고 발생율이 낮으나 비교적 우리 국민의 불법 체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III.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

- 정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면서 헌법 제2조 2항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임.
 - ※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여행자와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등 우리 국민의 활동영역 및 규모 확대 추세를 고려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요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건·사고 대응시스템’과 사건 예방을 위한 ‘사건·사고 예방시스템’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구축·시행 중임을 밝힘.

1. 대응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활동

1) 신속대응팀

-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으로 파견되어 △신속·정확한 피해현황 파악 및 예상되는 추가피해 예방 △생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지원 △피해자 가족 지원 △피해현장 당국과의 협조연락망 구축 등 임무 수행.

※ 최근 주요 실적: 2009 예멘 아국인 테러 사건, 2011년 2월 리비아 내전,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사고시 파견

<표16. 2008년 이후 신속대응팀 활동현황 >

시기	지역	사유	주요 활동내용
2008.8월	중국	북경올림픽	사고예방 및 안전지원 활동
2008.9월	중국	Zeus호 침몰	구조·수색작업 및 유가족 지원
2009.3월	예멘	예멘 아국 관광객 테러	사상자 및 유가족 지원
2009.5월	멕시코	멕시코 신종플루 발생·확산	현지 교민 감염예방 및 의학적 안전조치
2010.6월	남아공	남아공 월드컵	사고예방 및 안전지원활동
2011.1월	오만	삼호주얼리호 피랍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지원 부상자 후송·치료, 선원귀국 및 생포된 해적 국내압송 등 지원
2011.2월	뉴질랜드	뉴질랜드 지진	실종자 수색현황 확인 및 유가족 지원
2011.2월	튀니지 이집트 그리스	리비아 사태	리비아 탈출 우리국민 출국지원, 안전지대 이동 등
2011.3월	일본	일본 지진·해일 사태	우리국민 안전지역 이동·소재 파악·사망자 확인 및 구호품 지원 등
2012.7월	영국	런던올림픽	사고예방 및 안전지원활동

2) 24시간 영사콜센터

- 해외 사건·사고, 여권, 해외이주 등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 조직 및 구성현황
 - 총 30명의 인력으로 구성 : 외교부 직원 4명, 상담인력 운영업체 직원 24명, 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직원 2명 (자원봉사자 15명 별도 근무)
 - 상담사들은 1일 4교대로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업무 수행
 - 현재 서초구 국립외교원내 위치(2005.4~현재)

<표17. 영사콜센터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액
2009년	904	883
2010년	1,040	1,033
2011년	1,040	1,034

< 표18. 연도별 영사콜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

연도	2009	2010	2011
이용자수(명)	228,071	227,600	240,232

3) 영사협력원

- 공관이 주재하지 않거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적절한 요건을 갖춘 영사 협력원을 위촉하여,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대응을 비롯한 영사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음.
- 영사 협력원은 △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 대응, △ 공관장 또는 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지대응△ 영사 콜센터 통보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 현지정보 안내 및 △ 기타 공관장이 위촉한 업무 수행
※ 2012년 8월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서 총 108명 활동

<표19. 2009년 이후 영사협력원 현황 >

구분	'09년도	'10년도	'11년도
영사협력원(수)	65	103	109
사건·사고 처리(건)	7,188	8,369	13,445

4) 지역별 사건사고담당영사회의

-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의 대응능력 및 본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최근 실적
 - 2008년 1회: 중앙아·서남아 지역(11월)
 - 2009년 1회: 중남미 지역(11월)
 - 2010년 7회: 중남미(2월), 아프리카(3월), 동남아(4월), 러시아·CIS(8월), 서남아·태평양(9월), 유럽(12월), 중국(12월)
 - 2011년 8회: 중동(2월), 아프리카(3월), 북미(4월), 동남아(6월), 중남미(6월), 중국·몽골(7월), 일본(8월), 서남아·태평양(11월)
 - 2012년 5회: 중남미(2월), 러시아·CIS(3월), 중국·몽골(4월), 아프리카(6월), 유럽(7월)

5)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분실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 상황에 처할 경우,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 계좌를 이용하여 경비(3천 미불 한도)를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최근 실적: 2008년 329건(총 3억6천여만원), 2009년 362건(총 4억2천만원), 2010년 405건(총 5억8천여만원), 2011년 526건(총 7억3천여만원) 지원

6) 긴급구난활동비

- 해외사건·사고 발생시 공관 차원의 대형 사건·사고 수습활동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

- 긴급구난은 공관 자체판단(예: 2011 리비아 철수(2월) 및 일본 지진(3월)) 또는 재외국민의 민원(예 : 특수신분자 등)에 의해 이루어짐
 - ※ 대형 사건·사고 수습활동: 구조대원 파견, 비상사태시 국민철수 등
 - ※ 긴급 지원활동: 긴급의료지원, 국내 송환, 시신처리 등
 - ※ 최근 주요 실적: 2009년 4월 재멕시코 교민에 신종플루 방역 마스크를 전달, 2009년 9월 미국령 사모아 지진해일, 2010년 1월 아이티 강진 발생 당시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

- 긴급구난비용은 1차적으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인의 국내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거부 혹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

<표20. 최근 5년간 긴급구난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6월
집행액	126	83	102	173	45

< 표21. '08~'12년 해외 특수신분자(행려병자, 정신이상자 등) 신고(접수), 이송현황>

(단위: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1월~7월
국내연고자 유	43	46	43	31	20
국내연고자 무	8	6	10	16	8
국내연고자 유-신병인수 거부	13	4	19	18	6
계	64	56	72	65	34

※ 신고(접수)와 이송현황(건수)은 동일하며, 미이송 사례 없음.

<표22. 해외 특수 신분자 이송 절차>

구분	국내 송환 지원 (repatriation assistance)		국내 정착 지원 (resettlement assistance)
	재외공관	재외국민보호과	지방자치단체
상황	사건 인지	공관으로부터 사건 접수	외교부로부터 사건 접수
일반 조치	①환자 및 가족 인적사항 파악 및 가족 통지 ②본부 보고	①환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파악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 ②지자체로 통보받은 내용 공관에 통보 ③가족 지원 ④공항출영 등을 통한 국내송환시 신병인계	①기초생활수급권 선정 ②의료급여 책정 ③입소의료시설 선정 ④공항-의료시설간 후송 지원
유형 별 조치	유연고자	유연고자	유연고자
	①가족에게 신병인계 - 여행증명서 발급 - 항공권 예약 ※해외신속송금제도 이용	①가족통보 ②긴급여권 발급 등 가족 지원 ③해외신속송금제도 지원	해당사항 없음
	무연고자	무연고자	무연고자
	①임시보호시설 수용 ②본부지시따라 국내송환절차 개시 ③국내송환시 입국동행	①환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파악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 - 무연고자 여부 확인 ②지자체 조치 내용 공관에 통보 ③공항 출영 등을 통한 국내송환시 신병인계 ④긴급구난비 지원	①의료급여권 책정·기초생활수급권자 심사 및 선정 - 부양의무자 재산 심사 ②입소의료시설 선정 및 통보 ③공항-의료시설간 후송 관련 지원
	연고자 신병 인수 거부	연고자 신병 인수 거부	연고자 신병 인수 거부
	①가족에게 신병 인수 적극 권고 ②관련 비용 부담토록 권고 ③거부시, 무연고자와 동일하게 처리 ※필요시, 병원측에 체납 의료비 삭감 요청	①환자의 신병 인수 적극 권고 ②지자체와 협의하여 비용 지원 검토 ③가족 지원 불가 판단시, 무연고자 처리 ④필요시, 구상권 청구절차 시행 ⑤최소필요의 비용 긴급구난비 지원(항공비)	①의료급여권 책정·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심사 및 선정 ②입소의료시설 선정 및 통보 ③공항-의료시설간 후송 관련 지원

※ 필요시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지원

7)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 2009년 : 16개 공관, 6천8백만원 지원

<표23. 2009년 재외공관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실적>

공 관	실 적
주중국대사관	○ 아국인 절도 사건 등 총 11건 자문
주선양총영사관	○ 기업분규 협박 관련 자문 등 총 55건
주상하이총영사관	○ 횡령 피해 법률자문 등 총 21건
주광저우총영사관	○ 교통사고 보상금 관련 자문 등 총 106건 - 전화상담 약 4백건
주고베총영사관	○ 신원미상 사체처리 자문 등 총 6건(1건당 통상 1~5회) ○ 일반 영사업무 상담 9회
주뉴욕총영사관	○ 폭행사건 관련 자문 등 17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동포간 살인사건 자문 등 총 43건
주휴스턴총영사관	○ 달라스 한인 살인 사건 등 총 14건
주토론토총영사관	○ 불법체류 혐의 체포 관련 자문 등 총 14건
주상파울루총영사관	○ 철거민 시위중 화염병 사상자 사건 등 총 6건
주멕시코대사관	○ 수감자 관련 자문 등 총 48건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불법체류 관련 자문 등 총 6건
주프랑스대사관	○ 불법입국원조 혐의 체포구금 관련 자문 등 총 16건
주시드니총영사관	○ 유학사기피해 관련 자문 등 총 55건
주태국대사관	○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보험 등 구제 절차 문의 등 총 26건
주오주클랜드 분관	○ 유학생, 교사 가해 사건 등 총 8건

○ 2010년 : 25개 공관, 1억5천3백만원 지원

<표24. 2010년 재외공관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실적>

공관	실적
주중국대사관	○ 폭행사건 처리 관련 자문 등 총 16건
주선양총영사관	○ 사기사건 처리 관련 자문 등 총 45건
주상하이총영사관	○ 형사고소 관련 자문 등 총 37건
주광저우총영사관	○ 생활법률 또는 경제분규 관련 사건 다수
주고베총영사관	○ 신원미상 사체처리 관련 자문 등 총 8건
주뉴욕총영사관	○ 폭력사건 체포수감 관련 자문 등 총 5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교통사고 처리 관련 자문 등 9건
주휴스턴총영사관	○ 정당방위에 대한 자문 등 13건(기타 민원 관련 자문 다수)
주토론토총영사관	○ 폭행사건 관련 자문 등 총 21건
주상파울루총영사관	○ 교민 마약거래 구속사건 등 총 15건
주멕시코대사관	○ 횡령, 사문서위조, 절도사건 등 총 40건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사기사건 관련 자문 등 총 7건
주프랑스대사관	○ 살인미수 혐의 재판 관련 자문 등 총 18건
주시드니총영사관	○ 미약복용 및 소지혐의 체포 관련 자문 등 총 42건
주태국대사관	○ 강도피해사건 관련 자문 등 총 21건
주오클랜드분관	○ 상해사건 처리 관련 자문 등 총 8건
주칭다오총영사관	○ 폭행피해 및 신변보호 관련 자문 등 총 42건
주미국대사관	○ 수감자 도주사도 관련 자문 등 총 3건
주영국대사관	○ 강간혐의 구금사건 관련 자문 등 총 52건
주스페인대사관	○ 절도 피해 사건 관련 자문 등 총 6건
주싱가포르대사관	○ 2010.12월 위촉계약 체결, 2011년 실적보고서 일괄 보고 예정
주홍콩총영사관	○ 절도 혐의 체포사건 등 총 26건
주후쿠오카총영사관	○ 음주운전 뺑소니사건 관련 자문 등 총 3건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2010.12월 위촉계약 체결, 2011년 실적보고서 일괄 보고 예정
주필리핀대사관	○ 자살사건 처리 관련 자문 등 총 403건

○ 2011년 : 31개 공관, 1억9천5백만원 지원

<표25. 2011년 재외공관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실적>

공관	실적
주교베총영사관	○ 아국인 특수신분자 관련 자문 등 9건
주상하이총영사관	○ 한인업체 노무분쟁 자문 등 51건
주시드니총영사관	○ 해외청년체험프로그램 부실 관련 자문 등 17건
주오클랜드분관	○ 김경업 범죄인도 관련 자문 등 11건
주칭다오총영사관	○ 한국 관광객 대형버스 사고 관련 자문 74건
주태국대사관	○ 버스전복 사고 피해 관련 자문 등 25건
주필리핀대사관	○ 아국인 총기사고 관련 자문건수 965건, 사건사고 224건
주후쿠오카총영사관	○ 유학생 절도사건 등 관련 자문건수 25건
주미국대사관	○ 아국인 추방 건 관련 자문 등 21건, 무료법률상담 2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아국인 이혼 관련 자문 등 22건
주토론토총영사관	○ 유학원 사건사건 관련 자문 등 27건
주휴스턴총영사관	○ 아국인 이민피해 사건 등 5건
주멕시코대사관	○ 교환학생 검찰출두 관련 자문 등 60건
주상파울루총영사관	○ 교민 대상 강도사건 법률 자문 등 21건
주스페인대사관	○ 아국인 사기 범죄 관련 자문 등 11건
주영국대사관	○ 아국인 상대 사기 유학원 관련 자문 등 53건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아국인 가정폭력 자문 등 4건
주프랑스대사관	○ 아국인 살인미수 자문 등 14건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이민석 외환법 위반 관련 자문 등 11건
주선양총영사관	○ 한인교회 토지분쟁 관련 자문 등 50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아국인 광산채굴권 관련 분쟁 등 4건
주홍콩총영사관	○ 아국인 임금체불 관련 자문 등 29건
주밴쿠버총영사관	○ 아국인 부당노동행위 자문 등 3건, 법률상담 6건
주시카고총영사관	○ 김진일 이민국 억류 관련 자문 등 23건 사건사고 10건
주아르헨티나대사관	○ 용의자 오인 체포 장기구금 관련 자문 등 16건
주오사카총영사관	○ 재일교포 상속 관련 분쟁 등 자문 2건
주히로시마총영사관	○ 재일교포 상속 분쟁 자문 등 2건
주캄보디아대사관	○ 김정례 구속사건 등 총 5건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호주대사관	

※ 주호주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일본대사관은 11년 하반기 계약으로 12년 실적 보고서 실적 업데이트할 예정.

2.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활동

1) 여행경보제도

- 해외 각국(지역)의 위험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각 지역의 여행경보단계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하며, 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데 주안점을 둠. 조정 시마다 즉각 유관단체(여행업계·선교단체·NGO 등)와 관계부처에 통보
 - ※ 구분: 여행유의(1단계), 여행자제(2단계), 여행제한(3단계), 여행금지(4단계)

- 여행유의국(1단계), 여행자제국(2단계), 여행제한국(3단계)의 경우 △치안사정(내전·테러), △전염병 등 질병, △천재지변(지진, 해일) △강력사건 발생 등 현지 정세 등에 따라 수시로 등급을 지정하고, 요건완화 시 등급을 해제함.

- 최근 3년간 여행제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예멘 영해에서 조업중에 현지 부족 주민에 의해 억류된 한모씨(선장, 45세) 1건으로서 한씨는 어류 6톤을 강취 당하고 억류되었다가 12시간 만에 석방되었음.

<표26. 여행 경보 단계별 국가 현황>

(2012.9.27 현재, 총 89국가, 139지역)

여행경보 권고사항	국가 (지역)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1단계 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아시아 11	말레이시아(따와우, 사바주 해안지역), 몰디브(말레 수도섬, 아두섬 제외), 미얀마(제외:3단계 지정지역), 스리랑카(제외: 2단계 지정지역), 인도(제외: 2·3단계 지정지역), 인도네시아(제외: 2단계 지정지역), 중국(중·북한 국경지역: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일본(후쿠시마현(3단계 지역 제외), 캄보디아(반떼이 민제이, 바탐방, 푸삿), 필리핀(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루막탄섬(라푸라푸시))	
	북미 중남미 13	과테말라(제외:2단계 지정지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멕시코시티, 두랑고/바하칼리포니아/소노라/코아후일라/시날로아/미초아칸/게레로/베라크루즈주), 볼리비아, 브라질(리오데자이네이로, 상파울로, 비토리아, 헤시피, 살바도르), 에콰도르(제외:2단계 지정지역), 엘살바도르(제외:2단계 지정지역), 온두라스 (바히아삼), 자메이카, 콜롬비아(보고타, 메데진, 갈리, 까르타헤나, 부카라망가, 산타마르타, 바랑키야, 아르메니아, 베레이라, 마니살레스 등 대도시),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46개국	유럽 8	그리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안디잔, 카라수, 나만간, 페르가나 및 인접국 접경지역), 타지키스탄(제외:3단계 지정지역), 터키(무스/엘라직/아그리/오르두/오스마니아주), 키르기즈공화국(제외 : 2단계 지정지역), 투르크메니스탄(제외 : 레랍/마리주의 아프간 접경지역 일부)
		아중동 14	남아공, 르완다(제외:2단계 지정지역), 모로코, 바레인, 앙골라, 에티오피아(제외:3단계 지정지역), 요르단, 이란(제외:2·3단계 지정지역), 적도기니, 카메룬, 콩고(제외:브라자빌, 포인트누아), 쿠웨이트, 탄자니아, 튀니지(수도 투니스, 지중해관광도시(타바레카, 비제르트, 나비울, 힘마트, 소스, 모나스티르, 마흐디야, 스팍스, 가베스, 제르바))
제2단계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 필요성 신중검토	아시아 12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말레 수도섬, 아두섬), 방글라데시(제외:3단계 지정지역), 스리랑카(북부/동부주), 인도(안드레프라 데쉬/차티스가르/비하르/자르칸드/오릿싸/시킵/나가랜드/마니푸르/미조람/아루나찰프라데쉬주, 연방령 안다만 니코바르군도, 아쌈, 트리푸라, 메갈라야), 인도네시아(아체/말루꾸/중부 슬라웨시/파푸아 주), 중국 (신장위구르, 티베트), 태국(수린/시사켓 주의 캄보디아 국경지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제외:1·3단계 지정지역), 캄보디아(프레아 비헤아, 오파르 민제이)	
	북미 중남미 9	과테말라(과테말라/솔렐라/페텐주, 믹스코/비야누에바시), 멕시코(치와와/누에보레온/타마울리프스주), 베네수엘라, 아이티(Nord주/Nord-Est주), 에콰도르(끼도, 과야quil, 에스메랄다스, 만파, 콜롬비아와의 국경지역: 까르치주/ 수꿈비오스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주, 산타아나/ 산미구엘시), 온두라스(제외:1단계 지정지역), 콜롬비아(1·3단계 지정지역), 파나마(다리엔주)	
	54개국	유럽 6	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조지아(남(南)오세티아, 압하지야), 코소보(제외:3단계 지정지역), 키르기즈공화국(오쉬/질랄아바드/바트켄 주), 투르크메니스탄(레랍/마리주 아프간 접경지역 일부), 터키(훈셀리/빙콜/비트리스/바트만/마르딘주)
		아중동 25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제외:3단계 지정지역), 니제르(수도 니아메 지역), 라이베리아(제외:3단계 지정지역), 레반트(제외:3단계 지정지역), 르완다(몽고민주 공화국, 부룬디 접경지역(단,기세니,키부예,창구구 제외)),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누악소트, 누아디브), 부룬디(부줌부라시), 부르키나파소(제외:3단계 지정지역), 북수단(제외:3단계 지정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까자망스 지역), 알제리(제외:3단계 지정지역), 에리트레아(제외:3단계 지정지역), 우간다, 이란(이라크 국경지역(코르데스탄주 및 케르만샤주 서부지역 포함), 파키스탄·아프간 국경지역), 이스라엘(제외:3단계 지정지역), 이집트(제외:3단계 지정지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수도 은지메나), 케냐(제외:3단계 지정지역), 코트디부아르(수도 아비장), 튀니지(서부 알제리 접경지역(젠도바, 레케프, 케서린), 중서부 내륙지역(시디 보 지드, 가프사))

여행경보권 고사항	국가 (지역)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3단계 여행제한 긴급응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36개국	아시아 7	미얀마 (중국, 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 국경지역, 파칸(카친 주), 모곡(만달레이 주) 등 보석산지, 행정수도 네피도 주변지역(핀마나,레웨,탄곤)),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 힐 트랙스(카그라차리, 랑가마티, 반다르반)지역, 인도 (잠무/캐시미르 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지역 및 계획적 피난구역/피난지시해제구역/거주제한구역/귀환관람구역), 태국 (나라티왓/파타니/알라주, 송크홀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파키스탄 , 필리핀 (민다나오섬(제외:다바오/카가안데오로 시),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워-타워 군도, 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지역)
	북미 중남미 2	아이티 (제외:2단계 지정지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및 파나마 국경지역, 라구아하라/산탄데르/안티오키아/아라우카/바에 델 카우카/카우카/나리뇨/푸투마요/메타/카케타/구아비아레/초코/톨리마루/우일라 주)
	유럽 4	러시아 (북카프카즈 지역: 체첸, 다게스탄, 북오세티아, 카바르티노-발카리아 공화국, 잉귀쉬, 까라차이 체르케스, 아디게이), 코소보 (미트로비차),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터키 (하카리/시르트/시르낙/반/디아르바키주)
제4단계 여행금지 주시 대피·철수 방문 금지 5개국	아시아 1	아프가니스탄
	아중동 4	소말리아 ,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____친 국가는 경보단계가 전지역에 지정(나머지 국가는 경보단계가 여러 단계 또는 일부지역 지정)

2) 여행금지제도

○ 2007년 개정된 여권법에 의거, 우리나라민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시, 외

교통상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취득 의무 발생

※ 2012년 8월 10일 현재 소말리아·시리아·아프간·이라크·예멘 5개국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표27.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국가명	금지 지정일	금지 해제일	금지 사유
이라크	2007.8.7	2013.2.6까지 여행금지국 지정	정국 및 치안불안 지속
아프가니스탄	2007.8.7	2013.8.6까지 여행금지국 지정	치안불안 및 대형 테러 지속
소말리아	2007.8.7	2013.8.6까지 여행금지국 지정	사실상 무정부 상태 지속
리비아	2011.3.15.	2011.12.5 해제	
예멘	2011.6.28	2012.9.27까지 여행금지국 지정	테러 빈발 및 정세불안 지속
시리아	2011.8.30	2012.8.31까지 여행금지국 지정	정부군과 반정부군간 유혈충돌 지속

<표28. 우리 국민의 여행금지국 입국허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이라크	359	656	795	1,443	3,239
아프가니스탄	246	291	358	966	627
리비아	0	0	0	0	482
예멘	0	0	0	0	100
시리아	0	0	0	0	58
합계	605	947	1,153	2,409	4,506

※ 리비아는 2011.12.5 여행금지국가 지정해제(2011.3.15-12.5간 여행금지국 지정)

3)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SMS)

○ 2008년 이후 해외위급문자서비스 통한 실시간 해외안전정보 제공

<표29. 2008년 이후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정보 제공 현황>

구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1-8월)
문자서비스 (건, 연간)	60	320	314	382	261

4)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 개요 : 해외여행자가 신상정보, 국내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여행 전 미리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등록한 이메일로 여행 예정지의 안전정보 제공
- 등록 정보는 유사시 여행객의 소재 파악 및 가족과의 연락 등에 활용

<표30.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활용 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활용 건수	6,399건	5,690건	6,045건

5) 위험지역 안전점검 등

- 위험국가(여행금지국) 내 진출기업, NGO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해당국 주재 우리공관이 진출기업·NGO 현지 담당자를 통해 (유선통화 및 이메일) 수시로 우리국민 및 기업의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현황을 본부에 보고하고 있음.
- 또한 공관은 평소 주재국 유관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우리 국민·기업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전 관련 정보를 전달
 - ※ 이라크 치안상황 악화에 대비, 3.30일 이라크 진출기업 현장안전대책 민관합동회의 후, 본부는 주이라크(대)에 일일보고를 지시한 바 있음.
- 여행금지국이 아니지만, 범죄·테러 빈발 등으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지역의 경우에도, 재외공관이 현지 기업과의 협의회 개최, 비상연락망 체제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음.
 - 원양어선의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해당국가 주재 우리공관이 원양어선의 지역 사무소와 연락망을 유지하며 안전점검을 실시
 - 특히 위험 수역(예:소말리아 인근 및 아덴만 수역 등)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조 하에 안전 대책을 강화토록 권고

6) 해외안전여행 홍보

- 방송 : YTN 해외여행안전정보, KBS 한민족 네트워크
- 온라인 :
 - 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 ② facebook(www.facebook.com/4ursafetravel)
 - ③ twitter(www.twitter.com/4ursafetravel)
 - ④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 여행책자, 공항철도, 보딩패스, 기내잡지, 기내영상 홍보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및 각종 안전 리플렛 배포 등, 해외안전여행서포터즈, NGO·선교단체 초청간담회, Outreach 활동 등

7) 해외안전민관협의체 활동

○ 현황

- '09.12월 해외안전민관협의체에 관심을 가지는 여행금지국 진출 26개 기업체 및 2개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을 대상으로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

※ 재외공관은 해당국가 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상투자진흥회 및 지사협의회 등의 민관이 참여하는 유사협의체를 정기 및 비정기 개최

- 그러나 현재 해외안전민관협의체는 기업체의 참여 의지 부족과 관련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상설 조직화 및 활성화되지 못함.

IV.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한계 및 개선방안

-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대응적 차원의 보호대책과 예방적 차원의 보호대책을 수립, 활동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지는 실태는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가장 일선에서 노력해야 할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등 마인드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 이 때문에 영사콜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스템과 재외공관의 서비스를 직접 겪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선적으로 재외공관의 근본적 태도와 배려에 문제가 있음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재외공관의 태도 문제는 비단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게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도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재외공관을 비롯해 관련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즉, 국민을 상대로 기존의 외교통상부 활동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고수하기 전에 앞서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나서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먼저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에 접수 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청해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따라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이러한 불신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예산을 보다 효율적 집행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재외국민보호 활동과 관련한 예산은 2009년 약 15억원, 2010년 약 37억원, 2011년 약 37억원, 2012년 약 41억원으로 증가해왔음. 그러나 예산 증가 대비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성과 및 만족도는 떨어지는 상황임.

<표31.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 활동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 산	집 행
2009년	1,558	1,553
2010년	3,760	3,505
2011년	3,760	3,774
2012년	4,180	미결산

-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활동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우선 영사콜센터의 경우 인지도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현대리서치연구소), 영사콜센터의 인지도는 2009년 9.3%에서 2012년 13.3%로 올라갔으나 만족도는 2009년 74.5점에서 2010년 72.5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인지도는 증가한 반면 만족도는 하락한 구체적인 이유와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후 영세콜센터의 대국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또,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구난 제도 역시 한계가 있음. 재외국민 중 행려병자 등 특수신분자 발생시 외교통상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내시설에 입소토록 하고 있으나 해외 특수신분자들의 경우 대부분 주민등록말소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귀국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관부처(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와 관련해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이는 2009년 제도 도입 당시 여행경보단계(1-4단계)가 지정된 국가(현재 89개국)만 등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국가들의 경우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 현재는 모든 국가에 대해 등록이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나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2012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터넷등록제 가입절차에 “아이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동 시스템사용이 복잡하여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아이핀 인증 시스템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합치하는 가입방식(휴대폰 인증 등)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해외안전민관협의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해당 국가 진출 기업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도 필요할 것임.

2. 온두라스 한지수씨 사건을 통해 본 재외국민보호 대책

1) 온두라스 한지수씨 사건 관련 경위 및 일지

- 2008년 한지수 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온두라스에 머물며 당시 이중국적(영국과 호주)을 가지고 있던 다이빙 강사 대니얼 로스 씨의 집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음.
- 2008년 8월 22일,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로스 씨가 네덜란드 여성인 마리스카 마스트 씨와 함께 바에 와서 술을 마셨으며 한 씨는 먼저 집에 돌아와 잠들었음.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마스트씨가 사망함. 한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으나 이와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됨.
- 한지수 씨는 약 1개월 뒤 다이빙 강사 시험을 치르고 미국을 거쳐 한국에 돌아와다가 다이빙 강사를 하기 위해 이집트로 감. 그러나 2009년 8월 27일 한 씨는 이집트 공항에서 인터폴에 체포됐고 온두라스로 이송된 뒤 9월 23일 살인 혐의로 수감됨. 반면 로스 씨는 수감됐다가 풀려난 뒤 행방이 묘연해짐.
- 이후 2009년 12월 한씨는 다행히 수감 4개월만에 가석방되어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의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2010년 11월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됨.
- 한 씨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귀국한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 및 외교부의 적극적 노력이 결합되어 이루어낸 것으로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모범 케이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 씨 문제와 관련 대중들에게 처음 널리 알려진 것은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이 계기가 됨. 이를 본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 한 씨 사건을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음. 당시 트위터 활동이 활발했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트위터 상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 2009.11.1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자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전의 소극적인 입장과 태도를 버리고 오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로 전환함.
- 한 씨 사건과 관련, 초반에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이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으로 볼 때 언론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었으며, 이에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 TF 파견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한 모범 선례를 남김.

<표32. 온두라스 한지수씨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일 자	내 용
2008. 8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 취득 위해 온두라스 로아탄 방문
2009. 8	네덜란드 여성 살인 사건에 휘말려 이집트 공항에서 체포
2009. 9. 22	온두라스 라세이바 교도소 수감
2009. 11. 11	KBS '추적 60분'에 사건 관련 방송
2009. 11. 13	트위터를 통해 온두라스 한지수 씨 사건에 대한 문제 확산
2009. 11. 1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정동영 의원이 한지수 씨 사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공식 문제제기
2009. 11.18-19	정동영 의원, 친칠라 주한온두라스 대사 면담 및 온두라스 김순규 대사 통화
2009. 11. 20	온두라스 대사관에서 대법원장에게 공식 서한(Official Letter) 전달
2009. 11. 2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지수씨에 대한 개인 신원보증 문제 해결 재촉구
2009. 11. 29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과 담당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가, 남미법 전문가, 경찰청 수사관 등으로 이루어진 별도 TF 구성, 현지 파견 (온두라스로 출국)
2009. 12. 4	정동영 의원, 온두라스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과 통화 -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증을 한지수씨 아버지에게 전달함.
2009. 12. 15.	한지수씨 가석방 결정, 1년간 산페드로술라의 한인교회서 연금생활
2010. 9	온두라스 정부 본심 관할 법원으로 이첩
2010. 10. 17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구두판결]
2010. 11. 24	한지수씨 최종 무죄 판결
2011. 1. 5	한지수씨 귀국

2) 한지수씨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한 시사점

① 외교통상부의 신속한 대처 및 적극적 대응 필요

- 한지수 씨의 경우도 그러했듯이 초동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리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초반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통역과 변호사 지원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 또,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함. 한지수 씨 사건을 살펴보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로스 씨는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초반부터 강경하게 나와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 반면 초반에 우리 정부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해 한지수씨가 억울하게 수감되는 것을 피하지 못함.
- 특히 온두라스와 같은 사법적 후진국에서는 사법적 행위나 판결이 한번 발생하면 이를 되돌리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우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따라서, 항상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 결합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② 전문가 TF 파견 및 활용

- 한지수씨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례가 된 것이 바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파견 활동이었음.
- 당시 외교부에서는 남미법 전문가(교수), 국제법 전문가(변호사), 법의학 전문가(박사), 강력계 전문가(경감),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 보호과 담당과장과 서기관을 파견함.
- 이러한 전문가 TF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

계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사건·사고 발생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들로 한 팀을 구성, 초반에 현지에 파견한다면 타지에서 특히 사법적 후진국과 같은 곳에서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사후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더욱 요원할 것임.

③ 국민의 관심과 공유

- 한 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TV 방송부터 한씨가 귀국할 때까지 끊임없이 트위터에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했음. 특히 이러한 여론의 관심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임.
-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국민들의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 여론이 나의 일,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한지수씨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상황을 공유한 것도 큰 도움이 된 요소였음. 한 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알렸으며, 한 씨의 가족들도 온두라스 현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왔음.
- 이 때문에 트위터 등 온라인 상에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모두 한 씨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수 있었음.

④ 국회의 대책 촉구

- 트위터를 통한 여론의 관심에 이어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촉구한 것이 외교통상부의 태도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

- 한지수 씨 사건의 경우 활발하게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이며, 국회에서 처음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후속조치를 계속 점검하는 등 정부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꾸준하게 활동함. 또한 온두라스 대사 등을 비롯해 관련 인사들과 공개 및 비공개 접촉하며 외교적 노력에 함께 동참함.
- 따라서, 재외국민 사건·사고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함.

[부록]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제정 95.3.17 외무부 예규 95-5호

개정 01.12.28 외교통상부훈령 제37호

전부개정 2008.05.02 외교통상부 훈령 제110호

(제명 변경: 각종사고시영사업무처리지침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외교통상부 훈령 제 110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한다)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건·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3조(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 ① 재외공관은 헌법상 규정된 국가의 기본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지침 해석상 재외공관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외공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3. 이 지침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의 세부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사고 등 발생국가(이하 '주재국' 이라 한다)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5.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시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재외공관의 지침 숙지 및 시행의무)

- ① 재외공관의 총영사,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국제법과 이 지침을 숙지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침의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부(재외동

포영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시 경비관련 기본원칙)

-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보석금, 항공·선박 운임비, 병원비, 장례비, 시신 운구 비용 및 기타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이 국내 연고자로부터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국내 연고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구난활동비사용지침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로부터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부(재외동포영사국)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주재국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

-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 체포·구급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체없이 통보받고 필요시 적절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특히 공관 미상주국 또는 원거리 지역 내에서 평상시 관

할지역내 영사협력원, 한인단체 등의 지원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단)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외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폭행, 공갈, 협박, 명예 훼손 등 행위를 하여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를 남용 또는 악용하거나 그 보호의 근거가 되는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일반사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제9조(사건·사고 발생시 기본조치)

-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사고가 단순 민사 분쟁으로 밝혀지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보고는 전문으로 행한다. 다만, 본부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전문 보고 이전에 유선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영사콜센터로부터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처리직후 영사콜센터 상담프로그램(VMS)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 ④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관련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 책임하에 총영사 및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이 사건·사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연고자와 언론 등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에는 대외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 ⑦ 사건·사고 관련 자료들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⑧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 연결공관은 주재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을 동 시스템의 e-Consul에 입력하고,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 미연결 공관은 이를 본부(재외동포영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시 조치)

- ① 재외공관은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 온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제1항의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신고를 해온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외국민이 신청하면

여권법 규정에 따라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재외국민 사망통보 접수시 기본조치)

-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사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국내 유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현지에서 파견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시신 사후처리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족의 의사는 가능한 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강력범죄 발생시 조치)

-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납치, 감금 등 강력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사건·사고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재외국민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사건·사고 발생경위를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여야 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사고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정당한 요청이 주재국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에게 수사상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통보받은 사항을 본부(재외동포영사국)에 보고하고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설명하여야 한다.
- ⑥ 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재외국민의 체포·구금시 조치)

-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통해 그 신원과 혐의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현실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구금된 재외국민과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 ④ 재외공관은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국민에 대한 형 선고시 조치)

-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게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형의 종류, 복역장소, 면회 가능일시, 출소에정일(사형선고의 경우 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형의 선고를 받고 구금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시 그 결과를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당국이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에 위반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의 사법관할권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에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감자 면회 및 석방시 조치)

- ① 재외공관은 관할지역내에 복역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영사 면담을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건강상태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형당국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수감자에게 행형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관할지역내 수감자 수, 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사면담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 ④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가석방, 형집행정지, 형집행 종료 등으로 출소하는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시 가족 등 국내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실종신고 접수시 조치)

- ① 재외공관은 가족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행방 불명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소재 파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행려병자, 정신이상자 발생시 조치)

-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인 행려병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인적사항 및 보호장소 등을 파악하여 국내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재외국민이 주재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연고자들과 협의하여 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주재국 관계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거나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을 희망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은 연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재외국민의 신병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후 본부와 협의하여 국내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제18조(기본원칙)

-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에서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중대한 방사는 누출사고, 유전 등 산업시설 폭발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 전염병 확산 등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공관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사태 현황을 파악하여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병인실 등)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주재국 관계기관, 영사협력원, 한인단체, 공관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유무 및 체류현황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대피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외공관은 다음각호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상세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 대상 및 일시

2. 집결지 및 주재국내 이동수단

3. 전세기 필요시 기착일시 및 기착가능 공항

4. 전세기 이착륙시 주재국 협조사항

5. 인접국 전외공관의 지원 필요여부

- ④ 재외공관은 관련정보 교환, 대응방법 협의, 유사시 협조요청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 및 주요 우방국 공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관직원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연락관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 ⑤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 관계기관이 시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 또는 매장하는 등 임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재국의 관련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재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접촉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고, 본부로부터 구호금 의연금 등을 수령하는 때에는 관할 지역내 한인단체와 협의하여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19조(신속대응팀,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 등 파견요청)

- ① 재외공관은 대형 사건·사고 발생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관장 책임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을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신속대응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숙소예약, 차량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주재국에서 방사는 누출사고, 유전 등 산업시설 폭발사고, 항공기 추락 또는 공중폭발 사고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재국내 구호인력, 장비, 기술 등의 부족으로 정부차원의 구호팀 및 의료지원담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자 가족등에 대한 지원)

- ① 재외공관은 피해자 가족등 연고자의 현지 방문시 병원방문, 시신인수 및 송환,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피해자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이 국내 또는 인접국으로 긴급이송을 원하는 경우 제반 절차에 대한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재외국민 피랍사건 발생시 조치)

-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피랍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구출작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은 피랍자 구출과정에서 이 지침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민원업무 관련 조치사항

제22조(지원범위 외 민원사항 처리의 각하)

재외공관은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공관과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민원을 제기한 재외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민사분쟁 관련 조치)

-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사인간 민사분쟁의 해결을 요청해 올 경우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은 제공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이 사기 등 범죄와 관계되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재외국민이 주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
 2. 주재국에서 선임 가능한 변호사 명단 제공
 3.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